

의안번호	2213221
의 퇴 인	권칠승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7.
추계번호	25A5343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에 상임 위원장·부위원장을 고용하는 등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4억 8,100만원(연평균 4억 9,600만원)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23조제3항 (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위원회의 설치)	275	525	542	560	578	2,481	496

주 1) 2026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상임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, 연간 급여의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함

2)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제4항 (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)	○ (제4항)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	재량규정

2	안 제23조제3항 (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의 확대)	○ (제3항)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함 (현행)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(개정)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함	의무규정
3	안 제23조의2 (위원회의 사무기구)	○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.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제4항 (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)	×	조사 요건이 늘어나면 현행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확대 규모 등의 파악이 어려움
2	안 제23조제3항 (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위원회의 확대)	○	-
3	안 제23조의2 (위원회의 사무기구)	×	현재 유사 사업 실시 중

□ (안 제8조의2제4항)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확대될 경우 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어나 현행 사업 확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‘기술혁신기반조성(2131-302)’ 사업 중 ‘중소기업 기술탈취’ 내역사업에서 ‘기술보호법,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조사’의 비용으로 2025년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 - 이는 기술침해 기술자료 유용 조사(1억 8천만원), 전문인력 활용 등(1억 6,000만원)으로 구성

- 개정안에 따라 조사 요건이 확대되면 현행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 확대 규모, 소요 비용 등을 추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□ (안 제23조제3항)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에 위원을 10인 확대하는 것은 재정수반요인이 아니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- 위원회는 기업의 분쟁 조정·중재 신청에 따라 조정부를 5인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데, 위원이 10인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신청 건수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수당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

□ (안 제23조의2)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것은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’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가비용 산출이 불가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- 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-29호) 제7조¹⁾에 따르면 현행법 제14조제1항²⁾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,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은 ‘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’임
 -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2025년 6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³⁾하여 위탁하였고, 재단 내에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3명의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음

1) 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-29호)

제7조(위원회 운영 지원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.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·중재를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으로 둘 수 있다.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청서의 법률적 쟁점 및 신청요건의 검토
2. 외부연계형 사건 접수보고
3.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
4. 위원회 관련 법령·규칙 해석 및 제·개정 지원
5.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

2) 제14조(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3) 중소벤처기업부, ‘기술혁신기반조성(2131-302)’ 사업의 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” 내역사업 중 ‘기술분쟁 조정중재’ 내내역사업에 6억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

- 따라서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운영인력, 인건비·사업비 등 예산 소요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 - 다만, 2026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상임 위원장 및 부 위원장과 증원되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 하며 연간 위원회 회의 횟수의 절반만 참석하는 것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23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등 총 3인을 상임으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,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사무실 공간 등을 위한 임차료 등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유희공간을 활용하 고, 사업비는 현행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외
- (인건비)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간급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 례를 준용
 -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급여는 2024년 기준 각각 1억 7,901만원, 1억 4,912만원⁴⁾이므로 해당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산출

4)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급여에는 각종수당 및 4대보험이 포함됨

[표 2] 상임 위원장(1인) 및 부위원장(2인)의 인건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인원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위원장	1	95	197	203	210	217	923	185
부위원장	2	159	328	339	350	361	1,537	307
합계	3	254	525	542	560	578	2,460	492

주 1) 2026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, 연간 급여의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산출

2)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자산취득비)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상임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의 자산취득비 산출

- 상임 취임 첫 해인 2026년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산취득비⁵⁾는 1인당 699만원이므로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3인의 자산취득비는 2,097만원(3인×699.2만원)으로 산출

[표 3] 상임 위원장(1인) 및 부위원장(2인)의 자산취득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자산취득비	21	-	-	-	-	21	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에 상임 위원장·부위원장을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4억 8,100만원(연평균 4억 9,600만원)으로 추계됨

5)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연구용역인 『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(2020년)』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23조제3항 (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 중재위원회의 설치)	275	525	542	560	578	2,481	496

주 1) 2026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상임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, 연간 급여의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함

2)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